

# 교원 연봉제 운영에 관한 내규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봉계약제교수에 대한 연봉계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체결)** ① 교원신규임용시 1년간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동안 교수업적평가규정에 의거 평가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② 교원의 연봉은 별지서식 제1호에 의한 연봉계약서를 체결한다.

③ 계약의 내용에는 계약기간, 보수, 연봉외 급여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제3조 (계약기간 및 재계약)** ① 연봉의 계약은 임용일 기준 1년 단위로 계약한다.

② 계약기간 중 승진시 승진 임용일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계약한다.

③ 재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④ 임용계약 종료시에는 연봉계약도 자동 종료된다.

**제4조 (비밀유지)** 계약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보수)** ① 연봉액은 별표1의 기본연봉표와 별표2의 성과연봉표에 의한다. <개정 2011. 3. 1., 2011. 10. 1., 2011. 11. 1., 2012. 9. 28. 2013. 9. 1., 2014. 3. 1., 2016. 9. 2.>

② 최초계약기간의 연봉액은 연구 및 교육경력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이후의 계약에 있어 연봉산정을 위한 평가는 교수업적평가규정에 준한다. 단, 필요한 경우 그 연봉은 총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

③ 근무기간 중 본 대학교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 성과연봉에 특별 추가지원 할 수 있다.

**제6조 (관련규정의 적용)** 연봉계약제로 임용된 교원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로 정함이 없는 한 교원인사규정 등 관련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한다.

**제7조 (관련규정의 고지)** 임용권자는 계약체결 전에 신규임용 교원이 연봉계약제와 관련된 학내 규정의 주요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 (내규의 개폐)** 본 내규의 개·폐는 기획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결재로 시행한다. <개정 2011. 1. 28.>

##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 연봉계약제 교수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5조의 개정된 별표1의 기본연봉표는 2009년4월1일 임용자부터 적용하며, 이전 임용자의 경우 본인의 선택에 의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11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시행일 현재 체결되어 있는 연봉계약서의 연봉은 별표3의 조건표에 의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16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16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 연봉제교원 기본연봉표

### 정년트랙 교원

구 분 - 정년트랙	기본연봉표(원)	비고
조 교 수 초 임	28,560,000	
조 교 수 2년차	29,990,000	
조 교 수 2-1년차 *	30,740,000	
조 교 수 3년차	31,490,000	
조 교 수 4년차	33,060,000	
조 교 수 5년차	34,380,000	
조 교 수 6년차	35,760,000	
조 교 수 7년차이상	36,480,000	
부 교 수 초 임	37,190,000	
부 교 수 2년차	38,680,000	
부 교 수 3년차	39,840,000	
부 교 수 4년차	41,040,000	
부 교 수 5년차	42,270,000	
부 교 수 6년차이상	42,900,000	
교 수 초 임	43,540,000	
교 수 2년차	44,850,000	
교 수 3년차	45,750,000	
교 수 4년차	46,670,000	
교 수 5년차	47,600,000	
교 수 6년차	48,550,000	
교 수 7년차	49,040,000	
교 수 8년차	49,530,000	
교 수 9년차	50,030,000	
교 수 10년차 이상	50,530,000	

## 비정년트랙교원 기본연봉표

교육전담, 실습전담, 강의전담, 산학협력중점	기본연봉표(원)	비고
조 교 수 초 입	30,193,500	기본연봉에 성과급, 급식비, 자가운전보조비등 연봉외 급여 포함
조 교 수 2년차	31,656,000	
조 교 수 3년차 이상	32,218,500	
원어민교수 (기본시수 15시간)	기본연봉표(원)	1. 기본연봉에 성과급, 급식비, 자가운전보조비등 연봉외 급 여 포함.
조교수 초입	27,600,000	
조교수 2년차	28,980,000	
조교수 3년차	30,432,000	
조교수 4년차	31,956,000	
조교수 5년차	33,552,000	
조교수 6년차 이상	35,232,000	
연구교수	기본연봉표(원)	1. 기본연봉에 성과급, 급식비, 자가운전보조비등 연봉외 급 여 포함. 2. 연구비 재원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가감하여 책정.
조 교 수	30,000,000	

[별표2] 연봉제교원 성과연봉표

기준직급	성과급 A	성과급 B	성과급 C
조교수초임 (박사학위미소지자)		7,020,000	
조교수초임 (박사학위소지자)	9,730,000	9,130,000	8,530,000
조 교 수 2년차	10,250,000	9,650,000	9,050,000
조 교 수 3년차	12,150,000	11,550,000	10,950,000
조 교 수 4년차	12,750,000	12,150,000	11,550,000
조 교 수 5년차	13,380,000	12,780,000	12,180,000
조 교 수 6년차 이상	14,040,000	13,440,000	12,840,000
부 교 수 초 임	15,690,000	15,090,000	14,490,000
부 교 수 2년차	16,450,000	15,850,000	15,250,000
부 교 수 3년차	17,250,000	16,650,000	16,050,000
부 교 수 4년차	18,090,000	17,490,000	16,890,000
부 교 수 5년차 이상	18,430,000	17,830,000	17,230,000
교 수 초 임	20,680,000	20,080,000	19,480,000
교 수 2년차	20,900,000	20,300,000	19,700,000
교 수 3년차	21,130,000	20,530,000	19,930,000
교 수 4년차	21,410,000	20,810,000	20,210,000
교 수 5년차	21,690,000	21,090,000	20,490,000
교 수 6년차	21,970,000	21,370,000	20,770,000
교 수 7년차	22,250,000	21,650,000	21,050,000
교 수 8년차	22,530,000	21,930,000	21,330,000
교 수 9년차	22,810,000	22,210,000	21,610,000
교 수 10년차	23,030,000	22,430,000	21,830,000
교 수 11년차	23,240,000	22,640,000	22,040,000
교 수 12년차	23,450,000	22,850,000	22,250,000
교 수 13년차 이상	23,670,000	23,070,000	22,470,000

[별표3] 전임강사 명칭 폐지에 따른 연봉적용 조건표

연봉계약서 표기연봉	적용 연봉	적용연봉표
전임강사 초임	조교수 초임	공통적용
전임강사 2년차	조교수 2년차	기본연봉표
전임강사 2년차 이상	조교수 2년차	성과연봉표
전임강사 3년차 이상	조교수 2-1년차	기본연봉표
조 교 수 초 임	조교수 3년차	공통적용
조 교 수 2년차	조교수 4년차	공통적용
조 교 수 3년차	조교수 5년차	공통적용
조 교 수 4년차	조교수 6년차	기본연봉표
조교수 4년차 이상	조교수 6년차 이상	성과연봉표
조 교 수 5년차이상	조교수 7년차이상	기본연봉표

<별지 제1호 서식>

## 연 봉 계 약 서 (정년트랙)

학교법인 서울신학대학교 이사장(이하“갑”이라 한다)과 ○ ○ ○(이하“을”이라 한다)은(는) 교원의 임용에 따른 연봉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 1.(기간) “을”의 연봉계약기간은 \_\_\_\_\_년\_\_월\_\_일부터 \_\_\_\_\_년\_\_월\_\_일까지로 한다.
- 2.(연봉) “을”의 연봉액은 기본연봉 \_\_\_\_\_와 성과연봉 \_\_\_\_\_으로 하며, 성과등급은 평가에 의한 등급에 의한다. 산정된 연봉액은 매월 균등분할하여 지급한다.
- 3.(연봉외급여) 연봉외급여(자가운전보조비,가족수당,급식비,자녀교육비)는 해당여부에 따라 예산집행지침에 의하여 별도로 지급한다.
- 4.(의무) “을”은 임용기간 중 서울신학대학교 교원으로서 학내 제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성실히 복무하여야 한다. “을”이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갑”이 “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5.(특이사항) 임용계약 종료시에는 연봉계약도 자동 종료된다.

\_\_\_\_\_년 \_\_\_\_월 \_\_\_\_일

“갑” : 학교법인 서울신학대학교 이사장 ○ ○ ○ (인)

“을” : 주소 / \_\_\_\_\_

주민등록번호 / \_\_\_\_\_ ○ ○ ○ (인)

“입회인” 서울신학대학교 총장 ○ ○ ○ (인)